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의안번호 : 제2450호
- 제출일자 : 2025년 2월 3일
-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2. 제 안 이 유

- 보훈보상대상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원 입장료 감면 및 캠핑장(글램핑장, 캠프시설)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추가
(안 제20조제1항제15호, 제16호 신설)
- 나. 경과규정이 만료(2021년 12월)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(안 제20조제4항)
- 다. 글램핑장 및 캠프시설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 및 유형별 구분·정비(안 별표2)
- 라. 그 외의 문구 정비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있음(일부반영)

※ 의견내용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공원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

※ 반영사항: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, 그 외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향후 조례 개정 시 개선안 내용 반영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.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원 입장료를 감면하고 캠핑장(글램핑장, 캠프시설) 등의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 의견

- 안 제20조제1항제15호와 제16호는 ‘보훈보상대상자’와 ‘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’에게 공원시설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보훈보상대상자²⁾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, 이를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일환으로 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(안 제20조제1항제15호 신설).
- 안 제20조제1항제16호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³⁾에 따른 ‘수급권자’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목적인 공공의 복리 증진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20조제4항은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이용료 결제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만료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
1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1.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2.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가족

2)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: 전국 8,504명, 서울시 1,392명('24.6월 기준)

3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급권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
- 안 별표 2는 최근 글램핑장과 캠프시설(바비큐존 등) 등이 공원 내에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료는 글램핑장 9만원~12만원, 캠프시설 5천원~2만원으로 정하였는데, 이는 서울시 및 수도권 공공 글램핑장 평균 이용료⁴⁾와 현재 운영 중인 한강공원 캠핑장(난지) 이용료⁵⁾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캠프시설 이용료의 경우 최저와 최고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시설규모(이용 인원) 등에 따른 세부 이용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<글램핑 및 캠프시설 개정안 내용>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
[별표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					[별표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					
공원별	종별	사용 기준	금액 (원)	비고	공원별	종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고	
공통	야영장 (캠핑장)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◦ 입소일(1박2일 기준) 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 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	공통	야영장 (캠핑장)	일반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◦ 입소일(1박2일 기준) 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 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
		글램핑	야영장소 1회당				90,000~120,000			
		캠핑 시설 (바비큐존 등)	개소당				5,000~20,000			
		전기	전기 1회당				3,000~5,000			
		전기 1회당	3,000~5,000			전기 1회당	3,000~5,000			

4) 서울시 글램핑장 이용료 : 우이동가족캠핑장(9만원), 앵봉산캠핑장(9만원), 한강공원(10만원)
 수도권 글램핑장 이용료 : 평균(8만 5천원~11만 2천원)※왕송호수캠핑장(7~12만원), 초막골생태공원캠핑장(7~15만원)

5)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 [별표1] 3. 휴양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이용시간			
캠핑장	캠핑장	1박 기준 · 1면당(일반 2인용) · 1면당(일반 4인용) · 1면당(프리 4인용)	15,000원 20,000원 15,000원	14:00~ 다음 날 11:00		
		글램핑장	1박 기준 · 1면당		100,000원	15:00~ 다음 날 11:00
		캠핑시설	바비큐 · 1면당(4인용) · 1면당(8인용) · 1면당(12인용)		10,000원 15,000원 20,000원	
	캠핑파이어 · 1면당(8인용) · 1면당(15인용)		5,000원 10,000원	1차 17:30~20:00 2차 20:30~23:00		